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제1410호
- 다. 제출일자: 2023.10.16.
- 라. 회부일자: 2023.10.23.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2022.12.30.)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이 추가(제5조제1호 신설)됨에 따라, 용자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례 제6조에 위 제5조제1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에 조례 제5조제1호의 사업(「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호).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에 온실가스 감축 활동,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제1호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등에 동 기금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은 없음.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제6조(용자 또는 보조대상 및 절차 등) ① -- ----- ----- 1. 제5조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나.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이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노동자·계층에 대한 용자 또는 보조 포함)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 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1. ~ 5. (생략) ② ~ ⑤ (생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